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1103호 2016. 7. 19(화)

◀ 규 칙 ▶

-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제670호) 2

◀ 입법예고 ▶

-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제2016-42호) 16

◀ 고 시 ▶

- 포항 도시관리계획(우현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제2016-91호) 19
- 포항 도시관리계획(환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제2016-92호) 24

◀ 공 고 ▶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제2016-968호) 35

회								
람								

규 칙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이 강 덕

2016년 7월 19일

포항시 규칙 제670호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 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단서 중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을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조사하는것”을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조사를말한다”를 “조사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전자적형태”를 “전자적 형태”로, “신고하는것”을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신의에”를 “신의를”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증빙자료등”을 “증빙자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4조 중 “사실중”을 “사실 중”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를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당해 관할지역내”를 “해당 관할지역 내”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인자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개시전 또는 조사진행중”을 “개시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으로, “장애계협조”를 “장애계 협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간내”를 “기간 내”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다른규정등과의 관계)”를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중 “업무지침등”을 “업무지침 등”으로 한다.

제10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안 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제2호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같은 항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유망 강소기업 또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제12조의3제1항제4호(중전의 제3호) 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 기본법」”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건설업 법인”을 “건설업법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납기전”을 “납기 전”으로 한다.

제15조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 중 “당해 납세의무자의 일과시간내”를 “해당 납세의무자의 일과시간 내”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10일전”을 “10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천재.지변”을 “천재지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질병.장기출장”을 “질병, 장기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장부.증빙서류”를 “장부, 증빙서류”로 한다.

제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을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한다.

제18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9조 중 “기한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를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르지”로, “포함한다)시”를 “포함한다)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부.서류”를 “장부, 서류”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24조 중 “조사기간.조사범위.조사방법.조사장소”를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장소”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를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조사보고을”을 “조사보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비조사시”를 “준비조사 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지 를”을 “소지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일내”를 시일 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납기전”을 “납기 전”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발생되는”을 “발생하는”으로, “회수 하고”를 “회수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 기본법」 제136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세기본」 ----- ----- ----- ----- ----- ----- -----</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제2조(정의)----- -----<u>각 호</u>-----.</p>
<p>1. "세무조사"라 함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6조에 따른 질문. 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에 물건을 검사·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범칙사건 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1. ----- ----- ----- ----- ----- ----- -----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 -----.</p>
<p>2. (생략)</p>	<p>2. (현행과 같음)</p>
<p>3. "일반조사"라 함은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여부, 과세표준액 및 세율적용의 적정여부를 <u>조사하는것</u>을 말한다.</p>	<p>3. ----- ----- ----- ----- ----- <u>조사하는 것</u>-----.</p>
<p>4. (생략)</p>	<p>4. (현행과 같음)</p>
<p>5. "직접조사"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u>당해</u> 납세의무자 또는 그 관련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u>조사를말한다</u>.</p>	<p>5. ----- ----- ----- <u>해당</u> ----- ----- ----- <u>조사를 말한다</u>.</p>

6. (생략)

7. "전자신고"라 함은 조사대상 납세의무자가 제출할 서류를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적형태로 작성한 후 전자서명 및 암호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신고하는것을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여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생략)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하거나, 공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될 사항에 대하여는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6. (현행과 같음)

7. -----
----- 전자적 형태-----
----- 신고하는 것-----.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
----- 각 호-----
-----.

1. -----

----- 신의를 -----

- 아니 된다.

2. -----

----- 증빙자료 등-----
-----.

3. -----

----- 범위에서-----
-----.

4. (현행과 같음)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
----- 사실 중 -----
----- 해당 -----
-----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시장은 당해 관할지역내에서 지방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모든 과세 객체를 대상으로 수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자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의무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정,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시장은 조사 개시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규칙은 세무조사에 관한 다른 규정이나 업무지침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0조(납세의무자의 신고준중) 조사 대상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조사대상자) ① 일반조사 대상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세원종합관리 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

-----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해당 관할지역 내-----

----- . ----- 인정하는 -----
----- .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

-- 개시 전 또는 조사 진행 중-----

----- 장에게 협조-----
----- .

② -----

기간 내-----
----- .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

업무지침 등----- .

제10조(납세의무자의 신고준중)-----

----- 범위-----
-- .

제11조(일반조사대상자) ① -----
----- 해당 -----

적으로 검토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원칙의 범위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신고납부 풍토 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2조(특별조사대상자)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의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1. (생략)

2. 포항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신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3억원 이

----- 범위-----

② -----

----- 범위에서 -----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특별조사대상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경우에만 -----
-----.

제12조의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

-----.

1. (현행과 같음)

2. ----- 따라 -----

3.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유망 강소기업 또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4. 「중소기업 기본법」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자
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
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중복조사금지) ① 같은 납세자
에 대한 일반조사는 연 2회 이상 조
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만,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객관적으
로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있거나
납기전 징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15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
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당해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조사시간의 제한) 납세의무자
또는 그 관련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일과시간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10일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
에게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
1항 각 호에 규정한 사항을 통지하

② 제1항에도 -----

-----건설업법인-----

제1항에 따른 -----
-----.

제13조(중복조사금지) ① -----

-----해당-----

납기 전-----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조사장소의 한정) -----

----- 해당 -----

-----.

제16조(조사시간의 제한) -----

- 해당 납세의무자의 일과시간 내-
-----.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 -

--10일 전-----

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시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및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에 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권한이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④ 시장은 제3항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기간) 시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조사대상자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개시하되, 조사기간은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세무조사를 개시한 후 기한내에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

----- . -----

----- .

② 제1항에 따른 -----

----- .

- 1. 천재지변 -----

- 2. ----- 질병. 장기출장 -----
- 3. ----- 장부, 증빙서류 -----

③ 제2항에 따라 -----
-----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은 -----
----- .

- 1. ~ 4. (현행과 같음)

④ ----- 따른 -----
--- 7일 이내 -----
----- .

제18조(조사기간) -----

----- 범위 -----
----- .

제19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
----- 기한까지 -----

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당초의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수색, 영치의 금지) ① 세무조
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세범처벌
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 세
무조사(특별조사를 포함한다)시에는
납세의무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
을 수색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영치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
부,서류 등을 영치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영치증(별지 제1호 서식) 및
영치목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
하여야 한다.

제21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서
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치증(별지 제3호 서식) 및 예치목
록(별지 제4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장부, 서류 등의 예
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권행사의 제한과 납세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 납세
의무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
사권의 행사는 당해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

제20조(수색, 영치의 금지) ① -----
----- 「조세범 처벌절
차법」에 따르지 -----
----- 포함한다) 시-----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장부,
서류 -----

-----.

제21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현
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③ ----- 따른 -----

- 범위-----.

제23조(조사권행사의 제한과 납세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

-----해당-----
- 범위-----.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등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조사계획) 시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장소 등을 검토하여 조사대상자별 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지휘) ① (생략)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27조(조사의 개시 등) ① (생략)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그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 서식)를 휴대하고 이를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보고) ① (생략)

②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상황을 "조사중간보고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복명한다.

- 1. 당해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이 장기간인 때
- 2. 3. (생략)

제29조(조사진행관리) ① 조사보고를

② -----

----- 사람으로 -----

-----.

제24조(조사계획) -----

-----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장소 -----

-----.

제26조(조사지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람이 -----
-----.

제27조(조사의 개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 -----
-----.

제28조(조사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해당 -----

- 2. 3. (현행과 같음)

제29조(조사진행관리) ① 조사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조사방향을 제시한다.

② 준비조사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 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빠짐 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한다.

③ 모든 조사적출사항에 대하여는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여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30조(세무조사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의 통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법 제73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 2. 3. (생략)

제31조(과세정보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2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시장은 법 제136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증표를 조사 공무원별로 1매씩 발

-----.

② 준비조사 시 -----

-----.

③ -----

----- 소지를 -----.

제30조(세무조사 결과통지) -----

----- 시일 내 -----

-----.

- 1. ----- 납기 전 -----

- 2. 3. (현행과 같음)

제31조(과세정보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

----- 지체 없이 -----
-----.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

급하고, 퇴직 등 변동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 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은 별표 1로 정한다.

-----발생하는----- 회수하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
-----.

1. 개정이유

-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포항시로 부터 “(유망)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제7호 및 제20조 제1항제4호에 따라 포항시로부터 “유망 강소기업” 또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 면제함.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입 법 예 고

포항시 공고 제2016 - 42호

공 고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3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폐지이유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폐지(2014. 08. 19.)되어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4.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5. 규칙안 : 붙임

6. 의견제출

이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6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전화 270-2083, FAX 270-2080)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6 - 91호

포항 도시관리계획(우현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북구 우현동 산13-3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우현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7. 13.

포 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54	우현지구	포항시 북구 우현동 산13-3일원	45,600	감)411	45,189	포항고 제2012-51호 ('12.06.18.)	포항075 제2종일반주거, 최고고도지구(50m)

나)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54	우현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 A=45,600㎡→45,189㎡ 감) 411㎡	· 구역변경 없이 지적공부면적 반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감소

2)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제2종일반주거지역	45,600	감)411	45,189	100.0	포항075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3	우현지구	최고 고도지구	우현동 산13-3일원	50m이하	45,600	포항고 제2012-51호 (‘12.06.18.)	포항 075
변경	13	우현지구	최고 고도지구	우현동 산13-3일원	50m이하	45,189	포항고 제2012-51호 (‘12.06.18.)	포항 075

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3	우현지구	· 면적 변경 - A=45,600㎡→45,189㎡ 감) 411㎡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공원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90	우현 6공원	어린이 공원	우현동 산13번지 일원	-	증)222	222	-	포항075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내 공원과 합병)

나) 녹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8	녹지	경관 녹지	우현동 산10-4번지 일원	-	증)66	66	-	포항075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내 녹지와 합병)

다)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90	공원	· 공원(어린이공원) 신설 - A=222㎡	· 종교시설용지 진입도로 개설에 따라 축소되는 기존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체되는 공원 및 녹지시설 면적을 우현지구내 확보에 따른 신설
38	녹지	· 녹지(경관녹지) 신설 - A=66㎡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	
합계		45,189	-	4개 획지	45,189	
A-1	A	33,755	1	우현동 산13-3번지 일원	33,755	공동주택용지
B-1	B	11,146	1	우현동 산10-3번지 일원	11,146	종교시설용지
C-1	C	222	1	우현동 산13번지 일원	222	공원용지 (어린이공원)
D-1	D	66	1	우현동 산10-4번지 일원	66	녹지용지 (경관녹지)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우현동 산13-3일원	용 도	지정용도	· 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16층 이하 (50m 이하)	
		배 치	· 일조량, 통풍 등을 감안하여 남향배치 권장 및 관계법령에 의한 인동거리 유지	
		형 태	· 판상형 및 경사지붕 권장	
		색 채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 색채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과 동일하게 지정			
B-1	우현동 산10-3일원	용 도	지정용도	·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포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6층 이하 (50m 이하)	
		배 치	· 기존교회와 연계하여 배치 권장	
		형 태	· 평지붕 권장	
		색 채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 색채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과 동일하게 지정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도로) 결정 조서

가) 도로시설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91	10~13	국지 도로	247	중로1-53	우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일반 도로	-	-	포항075

나) 결정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소로1-91	· 노선신설 : 소로1류 - L=247m, B=10~13m	· 지구단위계획구역 교통량 분산 등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 신설

2) 공간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	공공공지	포항시 북구 우현동~신흥동 일대	58,078	감)150	57,928	포항시 고시 제10-34호 ('10.05.17.)	포항075

나)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0	공공공지	· 공공공지 면적 축소 - A=58,078m ² →57,928m ² 감) 150m ²	· 도로시설 신설에 따라 기존 공공공지 와 중복되는 부분 제척으로 인한 공공 공지 면적 축소

3. 포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도면 실음 생략(비치 도서와 같음)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도시계획과 054-270-3466)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고시 제2016 - 92호

포항 도시관리계획(환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북구 환호동, 두호동 일원의 도시관리계획(환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7. 14.

포 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여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가. 공원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환호공원	근린공원	포항시 북구 환호동 두호동 일원	1,351,183	-	1,351,183	건설부고시 제275호 (1973.7.2)	

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조성계획 총괄표 조서

구분	시 설 규 모 (㎡)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351,183		1,351,183	18,371.76	중 165.75	18,537.51	45,523.71	중 161.75	45,685.46	100.0	-	100.0
시설지 계	261,874.5		261,874.5	18,371.76	중 165.75	18,537.51	45,523.71	중 161.75	45,685.46	19.38		19.38
·도로 및 광장	72,487.4		72,487.4							5.36		5.36
·조경시설	14,008.1		14,008.1							1.04		1.04
·운동시설	39,279		39,279	2,455.00		2,455.00	8,330.00		8,330.00	2.91		2.91
·교양시설	78,759		78,759	13,536.50		13,536.50	31,865.67		31,865.67	5.83		5.83
·휴양시설	18,824		18,824	1,042.64	중 165.75	1,208.39	3,413.37	중 161.75	3,575.12	1.39		1.39
·유희시설	2,820		2,820							0.21		0.21
·편의시설	34,307		34,307	1,061.82		1,061.82	1,169.21		1,169.21	2.54		2.54
·관리시설	1,390		1,390	275.80		275.80	745.46		745.46	0.10		0.10
녹 지	1,089,308.5		1,089,308.5							80.62		80.62

2) 시설 및 건축면적 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지정면적	1,351,183		1,351,183	100.0		100.0	
공원시설부지면적	261,874.5		261,874.5	19.39		19.39	법적기준 40%이하 (시설부지면적/공원면적)
건축면적	18,371.76	증 167.75	18,537.51	1.36	증 0.02	1.38	법적기준 20%이하 (건축면적/공원면적)

3)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시 설 구 분	기정		변경후		위 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구조및규 모		비고
	번호	시설자명	번호	시설자명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후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총	계						1,351,183	1,351,183	18,371.76	18,537.51	45,523.71	45,685.46			변경
도로 또는 광장	합 계						72,487.4	72,487.4							변경 없음
	1	도로 (소계)	1	도로 (소계)			34,667.4	34,667.4							변경 없음
	2	광장 (소계)	2	광장 (소계)			37,820.0	37,820.0							변경 없음
	2-1	입구광장	2-1	입구광장	환호동 379	환호동 379	4,725	4,725							변경 없음
	2-2	"	2-2	"	환호동 산64-2	환호동 산64-2	715	715							변경 없음
	2-3	"	2-3	"	환호동 303-1	환호동 303-1	540	540							변경 없음
	2-4	"	2-4	"	환호동 294-3	환호동 294-3	945	945							변경 없음
	2-5	"	2-5	"	환호동 185	환호동 185	1,024	1,024							변경 없음
	2-6	"	2-6	"	양덕동 581	양덕동 581	4,150	4,150							변경 없음
	2-7	"	2-7	"	환호동 274	환호동 274	4,200	4,200							변경 없음
	2-8	"	2-8	"	두호동 256-3	두호동 256-3	900	900							변경 없음
2-9	중앙광장	2-9	중앙광장	환호동 385	환호동 385	5,479	5,479							변경 없음	

시 구 설 분	기정		변경후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구조및규모		비고
	번호	시설지명	번호	시설지명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도 로 또 는 광 장	2-10	중앙광장	2-10	중앙광장	양덕동 625	양덕동 625	4,818	4,818							변경 없음
	2-11	폭포광장	2-11	폭포광장	환호동 신63-1	환호동 신63-1	3,050	3,050							변경 없음
	2-12	휴게광장	2-12	휴게광장	두호동 105-1	두호동 105-1	1,015	1,015							변경 없음
	2-13	"	2-13	"	환호동 384	환호동 384	210	210							변경 없음
	2-14	"	2-14	"	환호동 335	환호동 335	380	380							변경 없음
	2-15	"	2-15	"	양덕동 613	양덕동 613	1,825	1,825							변경 없음
	2-16	"	2-16	"	환호동 신30	환호동 신30	1,790	1,790							변경 없음
	2-17	"	2-17	"	환호동 270	환호동 270	965	965							변경 없음
	2-18	"	2-18	"	두호동 239	두호동 239	1,089	1,089							변경 없음
조 경 시 설	합 계						14,008.1	14,008.1					9개소	9개소	변경 없음
	3	벽천 (소계)	3	벽천 (소계)	두호동 101	두호동 101	2,020	2,020					1개소	1개소	변경 없음
	4	잔디광장 (소계)	4	잔디광장 (소계)	양덕동 604	양덕동 604	2,470	2,470					1개소	1개소	위치 변경
	6	무경화동산 (소계)	6	무경화동산 (소계)	환호동 354	환호동 354	1,300.1	1,300.1					1개소	1개소	변경 없음
	7	프로그램 분수(소계)	7	프로그램 분수(소계)	환호동 380	환호동 380	920	920					1개소	1개소	변경 없음
	8	대폭포 (소계)	8	대폭포 (소계)	환호동 신63-1	환호동 신63-1	1,490	1,490					1개소	1개소	변경 없음
	9	조각공원 (소계)	9	조각공원 (소계)	환호동 458	환호동 458	3,140	3,140					1개소	1개소	변경 없음
	12	화계 (소계)	12	화계 (소계)			2,668	2,668					3개소	3개소	변경 없음
	12-1	화계	12-1	화계	양덕동 신243	양덕동 신243	387	387							변경 없음
	12-2	"	12-2	"	환호동 신34	환호동 신34	340	340							변경 없음
	12-3	"	12-3	"	두호동 신23-2	두호동 신23-2	1,941	1,941							변경 없음

시설구분	기정		변경후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구조및규모		비고
	번호	시설지명	번호	시설지명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운동시설	합계						39,279	39,279	2,455	2,455	8,330	8,330	3동	3동	변경없음
	20	도설지(소계)	20	도설지(소계)	두호동 산31	두호동 산31	1,520	1,520							변경없음
	21	체력단련장(소계)	21	체력단련장(소계)	환호동 338	환호동 338	840	840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22	다목적운동장(소계)	22	다목적운동장(소계)			13,410	13,410					5개소	5개소	변경없음
	22-1	다목적운동장	22-1	다목적운동장	환호동 333	환호동 333	4,045	4,045							변경없음
	22-2	"	22-2	"	양덕동 609	양덕동 609	4,283	4,283							변경없음
	22-3	"	22-3	"	환호동 199	환호동 199	2,070	2,070							변경없음
	22-4	"	22-4	"	두호동 256	두호동 256	1,820	1,820							변경없음
	22-5	"	22-5	"	환호동 185	환호동 185	1,192	1,192							변경없음
	23	게이트볼장(소계)	23	게이트볼장(소계)			1,974	1,974					2개소	2개소	변경없음
	23-1	게이트볼장	23-1	게이트볼장	환호동 302-1	환호동 302-1	680	680							변경없음
	23-2	"	23-2	"	두호동 238-1	두호동 238-1	1,294	1,294							변경없음
	24	농구장(소계)	24	농구장(소계)	환호동 336	환호동 336	2,375	2,375					2면	2면	변경없음
	25	스포츠센터(소계)	25	스포츠센터(소계)	양덕동 622	양덕동 622	3,070	3,070	1,325	1,325	5,300	5,300	지상2층, 지하1층 1동	지상2층, 지하1층 1동	변경없음
	26	클럽하우스(소계)	26	클럽하우스(소계)	양덕동 619	양덕동 619	1,500	1,500	950	950	2,850	2,850	지상2층, 지하1층 1동	지상2층, 지하1층 1동	변경없음
	27	골프연습장(소계)	27	골프연습장(소계)	양덕동 614	양덕동 614	8,200	8,200							변경없음
28	탈의실및창고(소계)	28	탈의실및창고(소계)	두호동 산27	두호동 산27	1,100	1,100	180	180	180	180	1층1동	1층1동	변경없음	
29	테니스장(소계)	29	테니스장(소계)	두호동 252	두호동 252	5,290	5,290					6면	6면	변경없음	

시 구 분	기정		변경후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구조및규모		비고
	번호	시설지명	번호	시설지명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교양 시설	합 계						78,759	78,759	13,536.50	13,536.50	31,865.67	31,865.67			변경 없음
	30	미술관 (소계)	30	미술관 (소계)			8,605	8,605	3,767.97	3,767.97	6,439.39	6,439.39	2개소	2개소	변경 없음
	30-1	미술관1	30-1	미술관1	환호동 383	환호동 383	6,818	6,818	3,313.83	3,313.83	5,657.65	5,657.65	지하1층 지상2층 1동	지하1층 지상2층 1동	번호 변경
	30-2	미술관2	30-2	미술관2	환호동 43	환호동 43	1,787	1,787	454.14	454.14	781.74	781.74	지상2층 2동	지상2층 2동	번호 변경
	31	야외전시장 (소계)	31	야외전시장 (소계)			2,664	2,664					2개소	2개소	변경 없음
	31-1	야외전시장	31-1	야외전시장	두호동 148-4	두호동 148-4	1,144	1,144							변경 없음
	31-2	야외전시벽	31-2	야외전시벽	환호동 388	환호동 388	1,520	1,520							변경 없음
	32	야외공연장 (소계)	32	야외공연장 (소계)			5,091	5,091					3개소	3개소	변경 없음
	32-1	야외공연장	32-1	야외공연장	두호동 103	두호동 103	1,071	1,071							변경 없음
	32-2	아외놀이 공연장	32-2	아외놀이 공연장	환호동 388	환호동 388	2,020	2,020							변경 없음
	32-3	전통놀이 공연장	32-3	전통놀이 공연장	환호동 297	환호동 297	2,000	2,000							변경 없음
	33	야외무대 (소계)	33	야외무대 (소계)			3,540	3,540					2개소	2개소	변경 없음
	33-1	야외무대	33-1	야외무대	환호동 272	환호동 272	2,020	2,020							변경 없음
	33-2	"	33-2	"	두호동 256	두호동 256	1,520	1,520							변경 없음
	34	해변놀이 무대(소계)	34	해변놀이 무대(소계)	두호동 60	두호동 60	4,192	4,192					1개소	1개소	변경 없음
	35	경상북도 학생종합 문화회관 (소계)	35	경상북도 학생종합 문화회관 (소계)	양덕동 255	양덕동 255	43,104	43,104	6,187.95	6,187.95	16,114.45	16,114.45	지하2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3층	지하2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3층	변경 없음
	37	자연학습장 (소계)	37	자연학습장 (소계)	환호동 464	환호동 464	5,140	5,140					1개소	1개소	변경 없음
	38	수련관 (소계)	38	수련관 (소계)	환호동 185	환호동 185	4,253	4,253	1,820.58	1,820.58	4,031.83	4,031.83	3층1동	3층1동	변경 없음
	39	시민문화관 (소계)	39	시민문화관 (소계)	환호동 266	환호동 266	2,170	2,170	1,760	1,760	5,280	5,280	3층1동	3층1동	변경 없음

시 구 분	기정		변경후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구조및규모		비고
	번호	시설지명	번호	시설지명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휴양 시설	합 계						18,824	18,824	1,042.64	1,208.39	3,413.37	3,575.12	1동	2동	변경
	13	가로휴게소 (소계)	13	가로휴게소 (소계)			2,850	2,850					3개소	3개소	변경 없음
	13-1	가로휴게소	13-1	가로휴게소	환호동 370-3	환호동 370-3	260	260							변경 없음
	13-2	"	13-2	"	두호동 39	두호동 39	200	200							변경 없음
	13-3	"	13-3	"	환호동 318-1	환호동 318-1	2,390	2,390							변경 없음
	14	휴게소 (소계)	14	휴게소 (소계)			6,465	6,465					7개소	7개소	변경 없음
	14-1	휴게소	14-1	휴게소	환호동 산64-2	환호동 산64-2	560	560							변경 없음
	14-2	"	14-2	"	환호동 339	환호동 339	2,520	2,520							변경 없음
	14-3	"	14-3	"	환호동 302	환호동 302	370	370							변경 없음
	14-4	"	14-4	"	환호동 산71-8	환호동 산71-8	150	150							변경 없음
	14-5	"	14-5	"	환호동 198	환호동 198	990	990							변경 없음
	14-6	"	14-6	"	환호동 산38-1	환호동 산38-1	860	860							변경 없음
	14-7	"	14-7	"	환호동 산246	환호동 산246	1,015	1,015							변경 없음
	15	전망휴게소 (소계)	15	전망휴게소 (소계)			730	730					2개소	2개소	변경 없음
	15-1	전망휴게소	15-1	전망휴게소	환호동 354	환호동 354	310	310							변경 없음
	15-2	"	15-2	"	두호동 344	두호동 344	420	420							변경 없음
	16	피크닉장 (소계)	16	피크닉장 (소계)			5,460	5,460					3개소	3개소	변경 없음
	16-1	피크닉장	16-1	피크닉장	양덕동 590	양덕동 590	2,690	2,690							변경 없음
	16-2	"	16-2	"	양덕동 612	양덕동 612	1,695	1,695							변경 없음
	16-3	"	16-3	"	양덕동 601	양덕동 601	1,075	1,075							변경 없음
17	노인복지 회관 (소계)	17	노인복지 회관 (소계)	두호동 239	두호동 239	3,319	3,319	1,042.64	1,208.39	3,413.37	3,575.12	자하1출 지상층 1동	자하1출 지상층 2동	변경	

시설구분	기정		변경후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구조및규모		비고
	번호	시설지명	번호	시설지명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유희 시설	합 계						2,820	2,820							변경 없음
	19	어린이 놀이터 (소계)	19	어린이 놀이터 (소계)			2,820	2,820					2개소	2개소	변경 없음
	19-1	어린이 놀이터	19-1	어린이 놀이터	환호동 302-1	환호동 302-1	850	850							변경 없음
	19-2	"	19-2	"	두호동 257-1	두호동 257-1	1,970	1,970							변경 없음
편의 시설	합 계						34,307	34,307	1,061.82	1,061.82	1,169.21	1,169.21	10동	10동	변경 없음
	41	화장실 (소계)	41	화장실 (소계)			658	658	338.0	338.0	338.0	338.0	7동	7동	변경 없음
	41-1	"	41-1	화장실	두호동 147-8	두호동 147-8	120	120	43.2	43.2	43.2	43.2	1층1동	1층1동	변경 없음
	41-2	"	41-2	"	환호동 299	환호동 299	70	70	43.2	43.2	43.2	43.2	1층1동	1층1동	변경 없음
	41-3	"	41-3	"	환호동 신64-2	환호동 신64-2	73	73	43.2	43.2	43.2	43.2	1층1동	1층1동	변경 없음
	41-4	"	41-4	"	환호동 294-2	환호동 294-2	160	160	43.2	43.2	43.2	43.2	1층1동	1층1동	변경 없음
	41-5	"	41-5	"	환호동 신13-6	환호동 신13-6	70	70	43.2	43.2	43.2	43.2	1층1동	1층1동	변경 없음
	41-6	"	41-6	"	환호동 신55	환호동 신55	86	86	86.0	86.0	86.0	86.0	1층1동	1층1동	변경 없음
	41-7	"	41-7	"	환호동 185	환호동 185	79	79	36.0	36.0	36.0	36.0	1층1동	1층1동	변경 없음
	42	주차장 (소계)	42	주차장 (소계)			28,890	28,890					13개소	13개소	변경 없음
	42-1	주차장	42-1	주차장	두호동 305-26	두호동 305-26	255	255							변경 없음
	42-2	"	42-2	"	환호동 362-1	환호동 362-1	5,570	5,570							변경 없음
	42-3	"	42-3	"	환호동 신63-1	환호동 신63-1	2,105	2,105							변경 없음
	42-4	"	42-4	"	환호동 323-3	환호동 323-3	4,840	4,840							변경 없음
42-5	주차장	42-5	"	환호동 294-5	환호동 294-5	680	680							변경 없음	

시설 구분	기정		변경후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구조및규모		비고	
	번호	사실지명	번호	사실지명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편의 시설	42-6	주차장	42-6	주차장	양덕동 581	양덕동 581	3,240	3,240								변경 없음
	42-7	"	42-7	"	환호동 264	환호동 264	2,230	2,230								변경 없음
	42-8	"	42-8	"	양덕동 628	양덕동 628	2,905	2,905								변경 없음
	42-9	"	42-9	"	두호동 신27	두호동 신27	950	950								변경 없음
	42-10	"	42-10	"	두호동 241-2	두호동 241-2	1,252	1,252								변경 없음
	42-11	"	42-11	"	두호동 신30-1	두호동 신30-1	2,840	2,840								변경 없음
	42-12	"	42-12	"	환호동 426-3	환호동 426-3	1,098	1,098								변경 없음
	42-13	"	42-13	"	환호동 185	환호동 185	925	925								변경 없음
	43	전망대 (소계)	43	전망대 (소계)			2,675	2,675	143.82	143.82	251.21	251.21	1동	1동		변경 없음
	43-1	전망대	43-1	전망대	환호동 신61	환호동 신61	1,055	1,055	143.82	143.82	251.21	251.21	3층1동	3층1동		변경 없음
	43-2	해변전망대	43-2	해변전망대	두호동 41	두호동 41	1,620	1,620								변경 없음
	44	종합휴게소 /매점 (소계)	44	종합휴게소 /매점 (소계)			2,084	2,084	580	580	580	580	2동	2동		변경 없음
	44-1	종합휴게소 /매점	44-1	종합휴게소 /매점	양덕동 신254	양덕동 신254	1,340	1,340	230	230	230	230	1층1동	1층1동		변경 없음
44-2	"	44-2	"	두호동 신31	두호동 신31	744	744	350	350	350	350	1층1동	1층1동		변경 없음	
관리 시설	합 계						1,390	1,390	275.80	275.80	745.46	745.46	1동	1동		변경 없음
	45	관리사무소			환호동 신63-1	환호동 신63-1	1,390	1,390	275.80	275.80	745.46	745.46	지상1층 지하1층 1동	지상1층 지하1층 1동		변경 없음
녹지	합 계						1,089,308.5	1,089,308.5								변경 없음
		녹지		녹지			1,089,308.5	1,089,308.5								변경 없음

4) 도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기 정			변경후			기 정						변 경 후						비고
도로종류			도로종류			도로계원			기능	시중점		도로계원			기능	시중점		
등급	류별	번호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면적		기점	종점	폭원	연장	면적		기점	종점	
총 계							9,080.5	34,667.4					9,080.5	34,667.4			변경없음	
중로	소 계						344.0	6,468.0					344.0	6,468.0				
	1	28		1	28	20	286.0	5,720.0	공원 진입로	환호동 444	양덕동 573	20	286.0	5,720.0	공원 진입로	환호동 444	양덕동 573	
	3	1		3	1	12	58.0	748.0	시설 접근로	환호동 185	환호동 185	12	58.0	748.0	시설 접근로	환호동 185	환호동 185	
소로	소 계						2,989.5	16,374.4					2,989.5	16,374.4				
	1	1		1	1	10	77.0	770.0	시설 접근로	환호동 425-5	환호동 산50-1	10	77.0	770.0	시설 접근로	환호동 425-5	환호동 산50-1	
	1	2		1	2	10	126.0	1,260.0	"	두호동 산31	두호동 256-4	10	126.0	1,260.0	"	두호동 산31	두호동 256-4	
	3	1		3	1	6	538.0	3,228.0	연결로	환호동 산55	두호동 305-36	6	538.0	3,228.0	연결로	환호동 산55	두호동 305-36	
	3	2		3	2	6	384.0	2,304.4	"	환호동 산49	두호동 산6-1	6	384.0	2,304.4	"	환호동 산49	두호동 산6-1	
	3	3		3	3	6	347.0	2,082.0	"	두호동 산7	두호동 25	6	347.0	2,082.0	"	두호동 산7	두호동 25	
	3	4		3	4	6	190.0	1,140.0	"	양덕동 산235	양덕동 산237	6	190.0	1,140.0	"	양덕동 산235	양덕동 산237	
	3	5		3	5	6	300.0	1,800.0	"	환호동 산50-1	양덕동 600	6	300.0	1,800.0	"	환호동 산50-1	양덕동 600	
	3	6		3	6	4	132.0	528.0	"	환호동 325-1	환호동 333	4	132.0	528.0	"	환호동 325-1	환호동 333	
	3	7		3	7	4	430.0	1,720.0	"	환호동 산64-3	환호동 산64	4	430.0	1,720.0	"	환호동 산64-3	환호동 산64	
	3	8		3	8	3	126.0	378.0	산책로	두호동 산26	두호동 산27	3	126.0	378.0	산책로	두호동 산26	두호동 산27	
	3	9		3	9	3	146.0	438.0	"	환호동 185	환호동 199	3	146.0	438.0	"	환호동 185	환호동 199	
	3	10		3	10	3	45.0	135.0	"	환호동 188	환호동 188	3	45.0	135.0	"	환호동 188	환호동 188	
	3	11		3	11	6	98.5	591.0	연결로	환호동 383	환호동 361	6	98.5	591.0	연결로	환호동 383	환호동 361	
	산책로	소 계						5,797.0	11,825.0					5,797.0	11,825.0			
		1			1	2	260.0	520.0	산책로	두호동 산8	두호동 50	2	260.0	520.0	산책로	두호동 산8	두호동 50	
		2			2	3	108.0	324.0	"	두호동 58	두호동 41	3	108.0	324.0	"	두호동 58	두호동 41	
		3			3	3	40.0	120.0	"	두호동 48	두호동 산7	3	40.0	120.0	"	두호동 48	두호동 산7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후						비고
도로종류			도로종류			도로제원			기능	시중점		도로제원			기능	시중점		
등급	류별	번호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면적		기점	종점	폭원	연장	면적		기점	종점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환호동		산책로			환호동				
		4							환호동 산61	환호동 산64				환호동 산61	환호동 산64			
		5							환호동 산64	환호동 산71				환호동 산64	환호동 산71			
		6							환호동 산70-1	환호동 산65				환호동 산70-1	환호동 산65			
		7							환호동 산66	환호동 산70-1				환호동 산66	환호동 산70-1			
		8							환호동 339	환호동 산64				환호동 339	환호동 산64			
		9							환호동 326-1	환호동 산70-1				환호동 326-1	환호동 산70-1			
		10							환호동 354	환호동 355				환호동 354	환호동 355			
		11							환호동 산66	환호동 산64-1				환호동 산66	환호동 산64-1			
		12							환호동 산71	환호동 516-4				환호동 산71	환호동 516-4			
		13							양덕동 586	양덕동 산252				양덕동 586	양덕동 산252			
		14							양덕동 산251	양덕동 605				양덕동 산251	양덕동 605			
		15							환호동 317	환호동 산39-1				환호동 317	환호동 산39-1			
		16							양덕동 산255	환호동 산38-1				양덕동 산255	환호동 산38-1			
		17							환호동 산33	환호동 188				환호동 산33	환호동 188			
		18							양덕동 603	양덕동 산246				양덕동 603	양덕동 산246			
		19							양덕동 산242	양덕동 산241-2				양덕동 산242	양덕동 산241-2			
		20							환호동 468	환호동 463-3				환호동 468	환호동 463-3			
		21							환호동 463-3	환호동 468				환호동 463-3	환호동 468			
		22							환호동 산33	환호동 469				환호동 산33	환호동 469			
		23							환호동 산33	환호동 495				환호동 산33	환호동 495			
		24							양덕동 612	양덕동 산242				양덕동 612	양덕동 산242			
		25							양덕동 612	양덕동 산245				양덕동 612	양덕동 산245			
		26							두호동 산23-1	양덕동 600				두호동 산23-1	양덕동 600			

5) 공원조성계획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7	노인복지회관 (휴양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 3,319㎡ (변경없음) • 건축면적 : 1,042.64㎡ → 1,208.39㎡ (증165.75㎡) • 연면적 : 3,413.37㎡ → 3,575.12㎡ (증161.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회관의 부속건축물을 증축(1동)하여 노인의 건강 및 취미생활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포항 도시관리계획(환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도면 실음 생략(비치 도서와 같음)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도시녹지과 054-270-3223)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공 고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포항시 공고 제2016 - 968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에 대하여 공사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16 . 7. 12.

포 항 시 장

- 1. 사업시행지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산220-15번지 일원
 - 2. 준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 명 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 연구기반시설
 - 3. 사업의 규모
 - 부지면적 : 76,717㎡
 - 건축면적 : 2,936.05㎡
 - 건축연면적 : 6,910.97㎡
 - 4. 사업시행자 : 포항시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 5. 사업 시행기간 : 2010. 6. 24 ~ 2015. 12. 31
-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270-347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